

○ 憲法裁判制度

○ 現行: 1988. 9. 10 88헌법재판위원회 제도

○ 民正黨: 1961. 10. 6 106헌법재판소 제도

○ 民主黨: 1961. 9. 26 106헌법대법원, 彈劾審判委員會
- 政黨解散制度 等

- 違憲法律審査權 補強
- 機關間 權限爭執 審判 權 추가
- 裁判官의 資格은 法官 資格 있는 자로 制限

○ 憲法裁判機關

- 憲法裁判制度는 憲法의 価値와 理念을 守護하려는 것으로서 違憲法律 審査에서 더 나아가 彈劾과 違憲政黨解散 및 憲法機關 사이의 權限 爭執까지를 포함하는 廣範圍한 事項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宗正의 違憲法律 審査 制度만은 영우에 足 19세기적 制度로서는 별도의 憲法裁判 機關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憲法裁判의 취지를 살리고 体系的인 事務遂行을 위하여 별도의 憲法裁判 機關을 設 置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憲法裁判 事件은 어느 것이든지 高度의 政治性을 띠고 있어서 一般訴訟 事件과는 다른 專門性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中立的 權力을 행사하여 法院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이를 一般法院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임.

○ 憲法裁判事件 및 運營

- 憲法裁判事件 중 가장 중요한 것은 違憲法律 審査인 바, 現行 制度는 訴訟公認을 法院의 權限 確保라는 측면에서 法院이 違憲否를 直接 審査하여 違憲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憲法委員會를 보내도록 하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 違憲法律審査事例이 全無하였던 바, 이는 憲法
委員會가 消極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大法院에서 違憲이라고
인정한事例이 全無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違憲法律審査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大法院에 違憲審査權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民主黨의 주장은 심히 正確인 것임과 正반대되는 것임.

- 民主黨에서는 이원적인 점을 시정하여 訴訟當事者가 違憲
이라고 주장할 경우 法院은 義務的으로 憲法裁判所에 提請하도록
하고 憲法裁判所에서는 이를 審判하도록 하여 違憲法律審査機關을
憲法裁判所로 單一化한 것임.

- 아울러 政黨도 一般結社라는 名목에서 行政府의 判斷에 따라
解散시켰던 北共黨의 事例을 戒함이나 違憲政黨의 限하여 憲法
裁判所 裁判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만 解散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政黨을 保護하도록 한 制度를 유지함은 아울러

- 地方自治의 실시로 國家와 地方自治사이의 權限爭執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처하여 獨立的 憲法機關인 憲法裁判所에서 이를 調整
하도록 하였음

- 이원적인 憲法裁判所의 明確한 權限과 地位에 비추어 裁判官의
選任은 國會·政府·法院에서 各等하게 參與하도록 하고 2資格은 法官
資格을 가진 者에 限하여 기타 大法官과 同等的인 身分保障을
함으로써 法院에서 管掌하는 경우나 다른곳에서 制度的 保障을
補完한 것임.